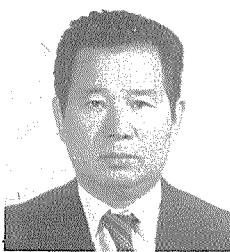


輸出增大的를 위한 海外特許의 확보



韓 圭 完

特許廳 審查 4 局長

수출은

외국제품과 비교하여

얼마나 양질의 제품을 얼마만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사실이다.

양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개선과

생산성 향상밖에 없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며 따라서 수출에 있어서 「기술

개발을 촉진, 보호」하는 특허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1. 序 論

輸出增大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경쟁력 있는 우수한商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다. 商品生產에는 資源, 勞動(技術) 및 資本의 生產要素가 필수적인 것인바 우리나라와 같이 賦存資源이 부족한 나라가 國際競爭에서 이길 수 있는 우수한商品을 만들 수 있는 길은 두뇌開發을 통한 技術革新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기술개발에 의한 품질의 개선과 신제품을 개발하는 길뿐인 것이다.

이러한 技術開發은 發明의 장려와 發明者的 保護育成을 통해서 보다 效率的으로 이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 바로 特許制度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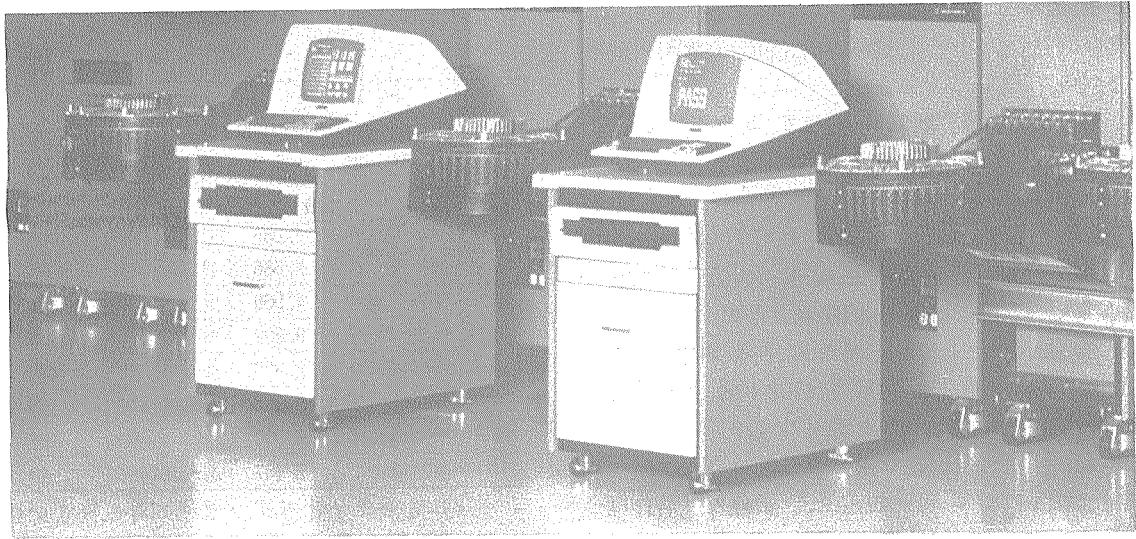
特許制度는 첫째, 發明의 장려·보호·육성을 통한 기술의 進步發展과 둘째, 國家產業의 發展에의 기여라는 두 가지 機能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特許法은特定 發明에 대하여 일정 기간 獨占, 排他的인 權利를 부여하므로써 이를 보호 내지 육성하는 한편 發明의 技術內容을 공개하므로써 技術의 擴散과 아울러 開發된 기술에 대한 낭비적인 중복투자를 예방하는 등 產業政策的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本稿에서도 이러한 特許制度와 관련해서 「發明과 產業發展」과 「輸出에 있어서의 特許의 重要性」을 고찰해 보고 우리나라의 海外特許現況과 문제점 및 海外特許確保 戰略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發明과 產業發展

현재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물질문명의 극치는 人類의 歷史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 온 發明의 「蓄積의 結晶」이라고 말할 수 있다.

人類文明의 발달은 古代原始社會의 「道具의 發明」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기술의 축적과 이의 확산 및 보급이 산업발전의 요체이다.

古代 原始社會에서의 道具의 발명은 人類生活의 편의를 제공하고 生產力を 증대시켜 주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社會變革이 일어나 계급 분화와 국가 형성을促進시켰고 이러한 變革은 역으로 다시 技術의 進步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古代나 中世에서의 發明에 의한 技術의 進步는 매우 느렸다.

그 이유는 과거에 蓄積된 技術이 극히 미미하였으며 그나마 通信手段과 交通手段의 미비로 技術이 擴散될 여건이 부족했고 게다가 記錄에 의한 技術蓄積 및 傳達手段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나침판의 發明과 이에 따른 航海術의 발달로 원거리 航海가 가능케 되어 여러 지역 간의 문화와 물물의 交流를 촉진시킴으로써 技術擴散이 가능케 되고 특히 文字와 종이의 發明으로 人間의 생각을 보전, 전달할 수 있는 記錄을 가능케 하므로써 技術의蓄積과 傳授가 용이하게 되어 技術發展에 크게 기여하게 된 것이다.

또한 中世 이후 노예제도의 붕괴에 따른 독일에서의 「길드제도」의 발달로 匠人們에 의한 發明 및 改良과 技術蓄積이 技術發展에 획기적인 공헌을 하였다.

이와 같이 「기술의 축적과 이의 확산 및 보급」이 產業發展의 요체이며 產業發展의 정도가 곧 國力의 척도가 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인바 이와 같은 技術의 發展이 國家的인 보호와 장려에

의하여 보다 촉진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영국의 예에서 잘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영국은 이미 1624년에 「專賣條例」를 제정하여 發明을 보호, 장려하는 制度를 실시하므로써 이것이 産業革命 태동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國家的인 보호, 장려에 힘입어 1773년에 존·케이의 섬유기계에 관한 發明을 기폭제로 한 産業革命의 發芽는 그후 1776년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차의 發明으로 本格化되므로써 産業革命의 꽃을 피워 영국의 國力이 全世界의 높을 차지하므로써 「태양이 지지 않는 大英帝國」을 建設하게 된 것이며 이는 결코 우연히 이루 어진 일이 아닌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先進工業國들의 特許制度의 歷史를 간추려 보고 特許保有件數와 國力(GDP기준)을 비교해 보는 것도 매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特許制度의 효시는 역시 영국이다.

영국은 1624年近代的 형태의 特許制度인 「專賣條例」를 제정, 實施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新産業導入을 위하여 외국인에게 「特權을 부여」하는 형태로 特許와 유사한 制度를 실시하였다.

최초의 特權賦与 행위는 1331年 에드워드3世에 의하여 네델란드의 織物專門家 John Kempe에게 「特許狀(Letters Patent)」을 授与한 것으로서 이것이 오늘날 特許를 의미하는 Patent의語源이 된 것이다. 그후 近代的 特許制度의 면

모를 갖추고 최초로 成文化된 것이 1624年의「專賣條例」이며 이것이 현대 特許制度의 효시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特許制度는 그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諸國에 傳播되어 같은 形式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프랑스도 초기에는 영국과 같이 王에 의하여 「特權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실시되었으나 17世紀 후반 組合的 統制의 旧體制로부터 自由經濟의 體制가 짹트는 것을 계기로 王에 의한 特許權 남발을 規制하기 위하여 1762年에 칙령으로 「一般規定」을 제정, 실시하다가 1791年에 近代的 의미의 特許法을 제정, 실시하게 되었다.

미국은 1787年 憲法規定으로 議會가 「著作權 및 發明者에 대한 排他的 權利 保障權」을 줄 수 있도록 하는 發明保護制度를 실시하다가 1791年에 현대 特許法의 전신인 獨립된 特許法을 제정, 실시하여 오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영국, 프랑스와 같은 형식으로 실시하였으나 封建體制 봉괴의 물결을 타고 「國王의 은혜로서의 特許賦与」를 규제하기 위하여 1815年 프로이센에서 「回章」을 制定, 實施하다가 帝國成立 후인 1877年에 特許法을 제정, 실시하여 오고 있는 것이다.

近代產業化가 비교적 늦은 일본에서는 歐美諸國의 特許制度가 어느 정도 정착한 후인 1885年에야 特許法을 최초로 제정, 실시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特許制度의 歷史를概觀하므로써 우리는 特許制度가 한 나라의 產業發展과 나아가서 國力伸張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보았다.

二次大戰 후 敗戰國이었던 독일과 일본이 焦土化된 여건에서 戰后 매우 빠른 速度로 再建을 이루하여 先進工業國의 先頭에 설 수 있게 된 것도 오랫동안 發明의 보호를 통해 이루어진 技術의 蓄積이 原動力이 된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인 것이다.

그러면 技術進歩의 함수라고 할 수 있는 特許保有件數와 國力(GDP기준)과의 相關關係는 表1과 같다.

1981年度 GDP基準으로 10大國의 GDP와 그들 國家의 特許保有 현황을 비교해 보았다.

표 1 선진공업국의 GDP 및 특허보유현황

(1981 기준)

순위	국별 GDP 현황			국별특허보유현황	
	국	명	금액(억Fr)	국	명
1	미	국	28,933	미	국
2	일	본	11,295	캐	나
3	서	독	7,085	일	본
4	프	랑	스	프	랑
5	영	국	4,966	영	국
6	이	탈	리	서	독
7	캐	나	2,825	벨	기
8	중	공	2,643	아르헨티나	68
9	멕	시	코	오스트레일리아	56
10	브	라	질	오스트리아	49

• 소련 등 동구권 제외 • 영국, 서독은 80년 기준

• 83 IBRD보고서 • WIPO 통계자료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GDP 6位以内 國家가 비슷한 順位로 特許를 가장 많이 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其他 國家인 中共, 멕시코, 브라질 등이 特許 保有件數는 미미하면서 GDP規模가 상위권에 속하고 있는 것은 天賦의인 領土의 크기와 풍부한 賦存資源 때문인 것으로 判斷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한 나라의 生產力を 결정하는 요인이 技術의 發展以外에 領土의 크기나 賦存資源의多少에도 달려있으나 비슷한 여건에서는 技術의 진보가 生產力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技術蓄積의 중요성과 技術의 진보·발전을 촉진하는 特許制度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3. 輸出에 있어서 特許의 중요성

輸出은 外國製品과 비교하여 얼마나 良質의 제품을 얼마만큼 저렴하게 生產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은 常識에 속하는 사실이다. 良質의 제품을 저렴하게 生產할 수 있는 방법은 技術開發을 통한 品質改善과 生產性向上밖에 없다는 것도 自明한 사실이며 따라서 輸出에 있어서 「技術開發을 촉진, 보호」하는 特許制度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輸出과 特許의 相關關係를 보기 위하여 世界 10大 輸出國의 輸出實績과 特許保有件數를 비교하여 보았다.

표 2 國別 수출실적 및 特許保有 현황

순위	國別수출실적(1982)		國別特許保有현황(1981)	
	국명	수출액(억Fr)	국명	件数(1,000)
1	미국	2,123	미국	1,123
2	서독	1,764	캐나다	415
3	일본	1,384	일본	408
4	영국	970	프랑스	305
5	프랑스	967	영국	211
6	사우디	758	서독	138
7	이탈리아	735	벨기에	90
8	캐나다	712	아르헨티나	68
9	네델란드	663	오스트레일리아	56
10	벨기에	524	오스트리아	49

- 83 IBRD 보고서
- WIPO 통계자료
- 영국, 서독은 80年 기준

表 1의 「GDP」와 「特許保有件数 比較」에서와 같이 몇 나라를 제외하면 輸出實績이 많은 나라가 역시 特許를 많이 保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原油수출이 수출의 전부인 사우디나 特許統計의 활용이 불가능한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輸出實績과 特許 保有件数가 거의 비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輸出에 있어서의 特許의 중요성을 재삼 確認할 수가 있는 것이다.

特許가 國內의으로는 技術開發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輸出에 기여하는 반면 해외 特許確保는 輸出增大에 또 다른 직접적인 效果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다.

표 3 國별 해외 출원 및 등록현황

구분	국별	일본	미국	서독	영국	프랑스	대만	스위스	기타(129)	계
특허	출원	212	190	40	57	43	24	10	238	818
	등록	6	60	4	9	4	3	3	39	128
	등록률(%)	2.8	31.6	10.0	15.8	9.3	12.5	30.0	16.4	15.6
실용	출원	144	7	13	3	2	25	3	8	205
	등록	7	-	1	-	-	1	-	3	12
	등록률(%)	4.9	0	7.7	0	0	4.0	0	37.5	5.9
계	출원	356	197	53	60	45	49	13	246	1,023
	등록	13	60	5	9	4	4	3	42	140
	등록률(%)	3.6	30.6	9.4	15.0	8.9	8.2	23.1	17.1	13.7

그 효과로는 첫째, 「海外特許取得」에 따른 技術輸出이다. 즉 特許의 實施權利를 許与하는 代價로 로열티를 받으며 技術合作을 통해 Know-How나 Plant輸出을 하는 것 등이다.

오늘날 國家間에 기술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企業의 國際化(多國藉企業 및 合作投資)가 增加하고 있는 여건에서는 技術輸出의 중요성이 減增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 海外特許確保로 特許商品에 대한 他國人の 모방을 防止하므로써 그 상품에 대한 輸出獨點權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特許에 관한 UN傘下 專門機構인 WIPO(世界知的所有權機構)에의 加入國이 107個國에 이르고 있으며 特許出願의 優先權 주장을 인정하는 國際條約인 「파리協約」加入國이 94個國, 1個國에의 特許出願으로 數個國에의 同時出願이 인정되는 「PCT(特許協力條約)」加入國이 36個國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위의 모든 機構와 條約에 加入하고 있어 대부분의 輸出對象國에 대한 特許活用이 가능한 實情이므로 輸出增大를 위하여 「海外特許確保」의 촉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4. 우리나라 海外特許 현황과 문제점

國別, 年度別 海外出願 및 登錄현황은 표 3 및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아래 表를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의 문제점을 들 수가 있다.

첫째로 우리의 그동안의 海外總出願이 1,000件 정도에 불과한, 극히 미미한 實情이며 登錄率마저 13.6%로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표 4 연도별 해외출원 및 등록현황

구분	연도별	75이전	76	77	78	79	80	81	82	계
특허	출 원	185	60	68	110	71	135	105	84	818
	등록	81	4	8	5	5	-	12	13	128
	등록률(%)	43.8	6.7	11.8	4.5	7.0	0	11.4	15.5	15.6
실용	출 원	21	11	12	16	54	26	47	18	205
	등록	5	-	-	2	-	1	2	2	12
	등록률(%)	23.8	0	0	12.5	0	3.8	4.3	11.1	5.9
계	출 원	206	71	80	126	125	161	152	102	1,023
	등록	86	4	8	7	5	1	14	15	140
	등록률(%)	41.7	5.6	10.0	5.5	4.0	0.6	9.2	14.7	13.6

82年 현재, 外國人의 우리나라에 대한 總特許(實用包含) 出願件数가 약 4萬件에 달하여 이 중 登錄된 것은 1만여건으로 평균 登錄率이 27.3%에 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海外出願이 量이나 質의 面에서 극히 低調함을 알 수가 있다.

둘째는 우리의 海外出願이 일본 및 미국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總出願 1,023件 중 일본과 미국에의 出願이 553件으로써 130 여개 出願對象國中 上記 兩個國에의 出願이 5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貿易構造가 美·日兩國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것과도 일맥 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세째는 75年 이전까지의 평균 登錄率이 41.7%에 달하고 있으나 75년 이후 82年까지의 평균 登錄率은 6.6%의 극히 低調한 실정으로 근년에 와서 海外特許의 質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海外特許의 量과 質이 低調한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우리의 기술 수준이 先進外國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技術開發의 역사가 日淺한데다가 企業에 의한 研究 및 技術開發投資가 미약하여 技術水準이 낮은 小企業 및 個人出願이 外國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에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로 特許, 특히 海外特許에 대한 認識이 부족하고 特許情報에 어둡기 때문에 海外特許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세째로는 特許에 대한 國家的인 支援施策의 부진을 들 수 있다. 海外出願補助·研究, 技術開發支援·發明에 대한 企業에의 支援 등 발명장려 施策의 부족도 그 원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海外特許 確保戰略

이상에서 우리는 技術開發 및 促進을 위하여 發明保護 즉 特許制度가 지니는 중요성과 特許制度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일찍 이를導入, 實施한 국가들이 技術開發을 통한 經濟復興을 이룩하여 오늘날 先進工業國의 先頭隊列에 서고 있음을 보았다. 이와 같이 볼 때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협소하고 부존자원이 貧弱한 나라에서는 오로지 技術開發을 통한 우수한 상품의 輸出增大만이 甚化되어 가는 國際競爭社會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再言을 요하지 않는 사실이라 하겠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이 Block經濟의 형성과 새로운 형태의 保護主義가 팽배하므로써 輸出競爭이 격화되고 있는 때에 輸出相對國으로부터의 마찰을 最少化하면서 輸出을 增大하는 길은 技術開發의 촉진과 開發된 技術의 보호를 위한 海外特許의 確保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오늘날 일본이 國제적으로 「經濟動物」이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世界第2의 超強大國으로成長할 수 있었던 것은 부단한 技術開發과 적극적인 海外特許確保로 VTR을 위시한 전자제품 등 우수한 상품을 輸出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서 단적인 좋은 예라 할 것이다.

그러면 海外特許 確保를 위한 戰略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國內 기술개발 촉진이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國內 技術水準이 外國에 비해 낮은 실정이므로 앞으로 國家의in 技術開發 支援 및 保護施策과 企業에 의한 技術開發 投資가 적극적으로 요망된다 하겠다.

特許出願으로 나타난 國內 技術開發 現況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總出願中 韓國人에 의한 出願은 特許가 20%에 불과한 반면 實用은 90%以上을 차지하고 있어 技術開發 水準이 낮음을 端的으로 보여주고 있다.

2) 特許(實用포함) 出願增加率보다 商標(의장 포함) 出願增加率이 훨씬 많음을 나타내고 있어 技術開發 노력이 아직도 부진함을 보여주고 있다.

내국인출원현황

구분 연도	출 원 건 수			증 가 율 (%)		
	계	특·실	상표·의장	계	특·실	상표·의장
1981	29,076	9,838	19,238	4.9	7.2	3.8
1982	34,528	11,056	23,472	18.8	12.3	22.0
1983	40,735	11,944	28,791	17.9	8.0	22.7

3) 個人出願이 外國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으며 企業出願 특히 電子產業 등 첨단분야에 대한 企業出願이 數個社에 한하고 있어 技術開發의 저변이 취약한 實情임.

4) 우선, 고무적인 것은 内國人 特許出願이 外國人의 特許出願에 비해 絶對數는 적으나 근래에 와서 增加率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첨단 產業인 컴퓨터, 반도체, 電子回路 등 電子產業分野의 增加率이 높다는 것이다. (1983 : 26% 증가)

둘째는 國際機構 및 條約의 적극적인 활용을 들 수 있다.

현재 特許와 관련된 國際機構 및 條約으로서는 UN傘下 專門機構인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加入國: 98)가 있으며, 工業所有權 보호를 위한 「파리條約」(加入國: 91) 및 「特許協力條約(PCT)」(加入國: 36)이 있다.

이와 같은 機構나 條約은 國家間의 特許協力과 技術情報交換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機構와 條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先進技術의 導入, 國際協力의 增大와 先進 特許情報의 수집 및 활용을 통하여 海外特許를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위의 모든 機構와 條約에 가입하고 있으며 加入國數는 100個國에 이르고 있어 우리의 主要輸出國이 전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海外特許 확대가 輸出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할 것이다.

특히 금년에 우리가 가입한 「PCT條約」은 海外特許確保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條約이므로 이에 대한 業界의 충분한 이해와 적극적인 활용이 요망되는 바 同條約의 利點中 중요한 것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國際出願節次의 통일과 간소화(1個國에의 國際出願으로 締約國中 出願인이 指定하는 모든 國家에 同時出願이 가능).

2) 國際調查機関이 작성한 國際調查 報告書의 활용(請求範圍의 補正 및 審查請求前의 出願維持与否 결정에 참고).

3) 個別國間의 審查結果의 일관성 유지

4) 國際公開된 外國技術情報의 활용

5) 開途國에 대한 特許協力(技術情報 및 人物의 支援 제공)

끝으로 海外特許 確保를 위한 出願料 補助를 들 수 있다. 特許出願은 모두가 特許되는 것이 아니며 特許가 되더라도 事業性 여부는 불확실한 것이므로 개인이나 영세기업에게는 特許出願料가 크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와 같이 海外出願의 登錄率이 극히 부진한 경우는 더욱 그런 것이다.

현재 政府는 海外特許出願 장려책의 하나로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30萬원 한도 내에서 海外出願料를 補助하고 있다. 앞으로 業界의 적극적인 海外出願 확대와 이에 부응하여 政府의 補助額增大 및 補助對象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